

## 여비지급규정

제 정 1995. 3.  
개 정 2011. 4.

### 제 1장 총 칙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한다) 교직원이 교직원 복무규정 제5장에 의하여 공무로 국내·외 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공무의 종류)** 공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교를 대표하는 각종 교육, 행사, 시찰 및 회의참석
2. 학교 행정상의 공무집행
3. 학문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·외 학술회의 참석
4. 재학생 및 졸업(예정)자의 취업지도 및 산학협력교류를 위한 기업체 방문

**제3조 (공무의 승인)** 공무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전결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4조 (여비의 종류)** 여비는 철도운임, 선박운임, 항공운임, 자동차운임과 같은 여행의 기본 교통운임과 현지 교통비, 숙박료, 식비 등과 같은 현지체재 비용으로 한다.

**제5조 (여비의 계산)** 여비는 정상적인 여정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. 다만,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실제로 경과한 여정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.

**제6조 (출장일수의 계산)** 출장일수는 공무로 소요되는 일수에 의한다. 다만, 천재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체재가 연장된 경우에는 이를 출장일수로 간주 계산한다.

**제7조 (대동자의여비)** 전임교직원과 동일한 목적의 학교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전임교직원 이외의 자를 출장에 대동하였을 경우에는 본 대학 전임교직원에 적용되는 여비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# 제 2장 여비지급 범위 및 방법

**제8조 (교통운임의 범위)** ①철도운임, 선박운임, 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실액으로 이를 지급한다. 단, 학교 소유의 차량으로 출장할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.

②제2조 4의 경우에는 별도 여비지급 기준에 의해 운임을 지급한다. (단, 거주지 출장시는 학사부총장이 운임을 조정할 수 있다) [신설 2011.4.1.]

**제9조 (실비교통운임의 지급)**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교통운임정액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 할 수 있다.

**제10조 (체재여비의 범위)** ①일비, 숙박료 및 식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.

②수로여행에 있어서는 천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육상에서 숙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박료 및 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단, 식탁료(야식)등과 같이 따로 식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숙박

의 횟수에 따라 식비로 지급한다.

**제11조 (교원연수비 지급)** 교원의 연수는 국내 및 국외연수로 구분하고 교내연구비 지원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2조 (지급제한)** ① 학생활동지도에 따르는 출장시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비는 따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예산과목에서 지출할 수 있다.

② 학생의 견학 및 교외실습지도에 따르는 출장시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비는 따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예산과목에서 지출할 수 있다.

③ 공무 및 연수로 인한 출장이라도 행사 주관 단체에서 경비 일체를 제공할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**제13조 (지급특례)** 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2조의 지급제한에 관계없이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.

② 수행의 경우 여비지급액은 상위자에 준한다.

③ 교직원 이외의 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4조 (근무지내 출장의 현지교통비)** 근무지내의 출장에 있어서는 출장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현지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5조 (국외여비)** 학교공무로 국외연수 및 여행을 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에 정한 금액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. 단,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**제16조 (기타)** 여비지급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 등을 준용하되, 이에도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